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4 - 57 - 231호 (사건번호 : 201411조사030~032)

안 건 명 이동통신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통신 등 22개 이동통신 유통점
※ 피심인 현황은 별임1 참조

의결연월일 2014. 12. 4.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5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1,500,000원 : ○○통신 등 19개 유통점

나. 과태료 1,000,000원 : ○○커뮤니케이션 등 3개 유통점

다.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유통점별 과태료 부과내역은 붙임2 참조

이 유

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기간('14.10.31.~11.2.) 중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를 받은 유통점 및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자 모집실적 상위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2. 행위사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은

① 번호이동 · 신규가입 ·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과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여서는 아니되며,

②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과다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유통점별 위반내역은 붙임2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1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음

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 단말기 유통법은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에서 ① 지원금의 차별지급, ②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단말기 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 단말기 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및 동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III. 시정조치 명령

1. 위반행위의 중지

피침인은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침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침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事實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5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0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 이상

3.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침인은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V. 과태료 부과

피침인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별표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금번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과태료를 적용한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반 규정	과태료 금액	위반횟수
		1회
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②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2.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별표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대하여는 50%(50만원)를 가중한다.

이외, 별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는 없다.

3.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통신 등 19개 유통점에 대하여는 과태료 1,500,000원, ○○커뮤니케이션 등 3개 유통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00,000원을 각각 부과한다.

※ 유통점별 과태료 부과내역은 불임2 참조

V.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침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침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VI. 결론

상기 피침인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 12. 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홍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